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51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20. 10. 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0. 10. 8. 접수 제1756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C 주식회사(2028. 6. 26. 상호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B 주식회사'라고 한다)에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35%,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2. 14.경 위 대여금 채권은 원리금은 합계 30,823,781원(= 원금 30,470,000원 + 이자 222,553원 + 지연손해금 131,228원)이다.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20. 10.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0. 10. 8. 접수 제17563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B 주식회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 주식회사는 시가 합계 822,446,8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264,500,000원인 기계기구를 소유하여 적극재산의 가치는 합계 1,086,946,8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 기재 원고의 차용금 채무 63,71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영암군에 대한 지방세 채무 2,463,620원, 목포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무 28,821,19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00,000원 합계 1,334,994,81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B 주식회사는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주식회사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영암군, 목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B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10. 8. 경료되었는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10. 8.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설사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 이후 원고는 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2017. 8. 18.자 대여금 채권을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7. 20.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B 주식회사가 2014. 6. 30.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그 내용은 2014. 6. 30.자 대여금 채무인 사실, 그 이후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2017. 8. 18. 대여금 채권은 위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7. 7. 20.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효인 위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2017. 7.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2017. 8. 18.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B 주식회사의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 F는 B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20. 10억 원을 대여한 이후 F 및 피고 명의로 2019. 1. 21.경부터 2019. 10. 31.까지 6억 7,400만 원을, 2020. 2. 10.경부터 2020. 10. 7.까지 3억 3,030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약 4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담보를 위하여 G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이후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 등 합계 8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바, 사해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 및 그 배우자인 I 등에게 2019. 1. 21. 94,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2. 17.까지 합계 1,081,3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G 주식회사 소유인 전남 영암군 J 외 2필지 지상 제1호 공장에 관하여 2019. 12. 17.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H, 채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2020. 7. 3. 말소됨)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각 금원의 대부분을 B 주식회사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H, 그 배우자인 I에게 송금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2019. 12.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사건 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아닌 G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채무자 역시 개인인 'H'인 점, 피고가 B 주식회사가 계속 추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융통한 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 주식회사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를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영암군, 목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B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등으로 권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B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등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이 개시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채권액인 30,823,781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별지